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88
----------	-------

발의연월일 : 2025. 9. 23.

발 의 자 : 한창민 · 용혜인 · 윤종오
손 술 · 박정현 · 윤준병
김재원 · 정혜경 · 최혁진
김종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확정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에게 이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체계로 인해 투자 위험 대비 낮은 수익률, 수익자인 기업과 근로자에게 불친절한 공시와 정보 제공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자단체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와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관리·감독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이자 궁극적인 수익자가 주도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상품 공급자인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지배구조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함.

이에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누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

간 기준을 삭제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제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단서 삭제).
-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함(안 제12조의2 신설).
- 라.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퇴직연금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퇴직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 마. 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5 신설).
- 바. 퇴직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의6 신설).
- 사. 퇴직연금공단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8 신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나 운영방법을”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그 운영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하 “계약형”이라 한다)
2. 제12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공단과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하여 「신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이하 “신탁설정계약”이라 한다)하는 방법(이하 “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을 정한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를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공단을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퇴직연금공단

제12조의2(퇴직연금공단의 설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3(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퇴직연금 급여의 결정 및 지급
3. 퇴직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4. 퇴직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6.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12조의4(퇴직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0조에 따른 부담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제12조의5(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2조의6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6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6(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고용노동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 관계 전문가로서 퇴직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7(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이 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12조의8(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항”을 “사항(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의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나 운영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1조의 제목 중 “적립금”을 “계약형의 적립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입자”를 “가입자(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운용방법) 퇴직연금기금으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별 적립금은 공단이 통합하여 운용한다.

제2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퇴직연금제도를”을 “계약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를 “계약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연금공단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공단의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자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퇴직급여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4조(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 <u>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u> <u>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u> <u>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u> <u>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u> <u>아니하다.</u>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 ----- ----- ----- ----- . <단서 삭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u>퇴직급여제</u> <u>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u> <u>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u> <u>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u> <u>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u> <u>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u> <u>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u> <u>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u> <u>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u> <u>한다.</u>	③ ----- ----- <u>퇴직급여제</u> <u>도의 종류나 운영방법을</u> -----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그 운영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하 “계약형”이라 한다)

2. 제12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공단과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하여 「신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이하 “신탁설정계약”이라 한다)하는 방법(이하 “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을 정한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생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같음)

② -----

-----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공단을 말한다)-----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

-----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장의2 퇴직연금공단

제12조의2(퇴직연금공단의 설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3(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퇴직연금 급여의 결정 및 지급

3. 퇴직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4. 퇴직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신 설>

<신 설>

6.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12조의4(퇴직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0조에 따른 부담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제12조의5(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2조의6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
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
장에서의 거래

5.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
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 외
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
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
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

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그 수익
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
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
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
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6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
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
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
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를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
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신 설>

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6(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고용노동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

<신 설>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 관계 전문가로서 퇴직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
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
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
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
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2조의7(국고 부담) 국가는 매
년 공단이 퇴직연금기금을 관
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5. (생략)
<신설>

- 6.·7. (생략)
- ② (생략)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 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

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사항(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한정한다)

4의2.·5. (현행과 같음)
 5의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나 운용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6.·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계약형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
 -----가입자(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u>의 가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②·③ (생략) <u><신설></u>	②·③ (현행과 같음) <u>제21조의5(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운용방법) 퇴직연금기금으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별 적립금은 공단이 통합하여 운용한다.</u>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u>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u> 7. (생략)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공단</u> 7. (현행과 같음)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

약의 체결) ① <u>퇴직연금제도를</u>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 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u>퇴직연금제도를</u>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약의 체결) ① <u>계약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u>-----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u>계약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u> 설정하려는 사용자-----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